화약류 제조시설 신청 안내 매뉴얼

- 화약안전처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Guns &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

【 목 차 】

1. 화약류 제조시설 개요 ····· 3

2.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신청 절차 ····· 3

3. 화약류 제조시설 허가 절차 ····· 4

4.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구비서류 ····· 5

5.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신청시 주의사항 9

6. 화약류 제조시설 기준 안내 ····· 10

7.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신청서 서식 ···· 17

○ 붙임.1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 신청서 ····· 18

○ 붙임.2 화약류 제조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 19

1 화약류 제조시설 개요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43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내지 15조

□ 허가 대상

○ 화약류의 제조업자(화약류의 변형·가공업 포함)

○ 화약류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자

○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 방법을 변경하려는 자

○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자

□ 허가 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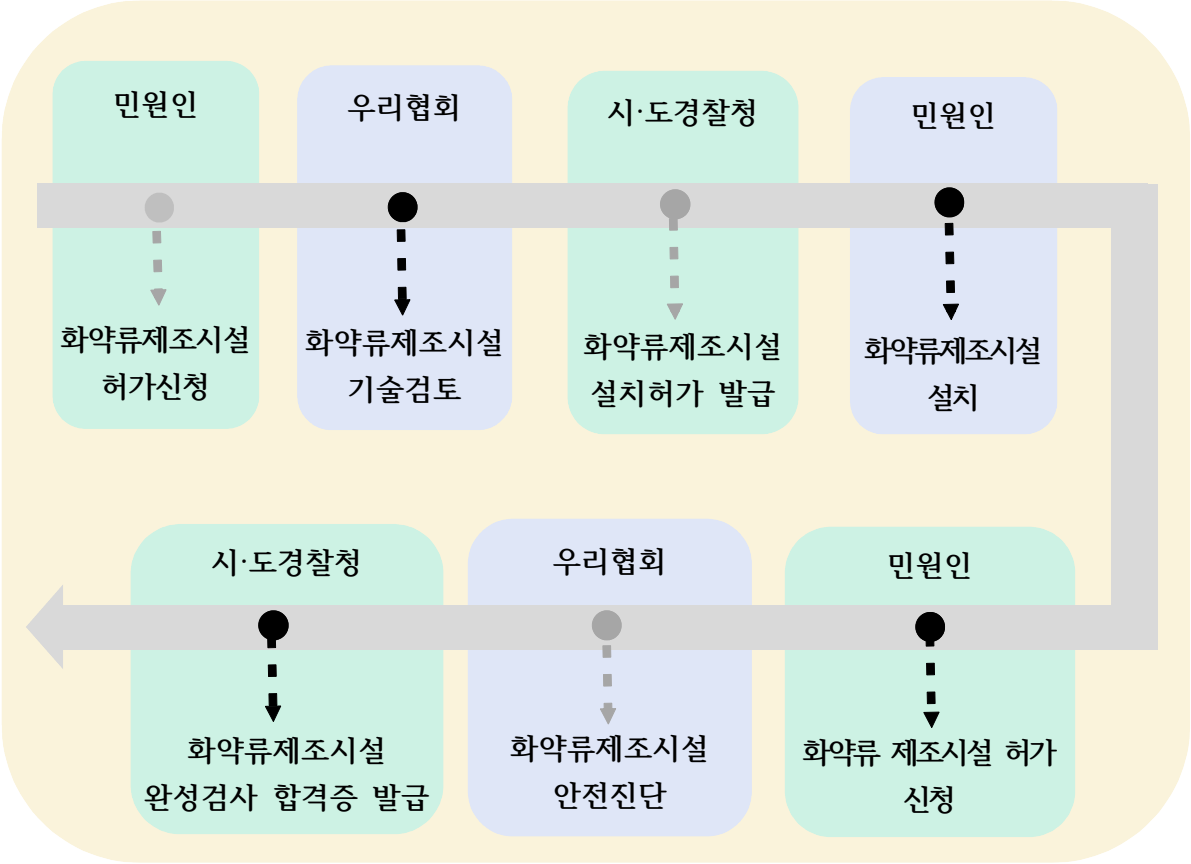
○ 경찰청장 : 화약 폭약 제조허가

○ 시·도경찰청장 : 화공품

2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신청 절차



3 화약류 제조시설 허가 절차



○ 협회 기술검토의견서 및 안전진단결과서는 허가신청 전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첨부

○ 제조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

4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구비서류

□ 공통사항

○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신청서 1부

- 의뢰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의뢰 사유(목적)를 상세히 기재

  [예 : 신규 허가를 받기위한 기술검토(안전진단)]

- 제조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종류 및 최대정체량 등을 기재

※ 제출 도면상 이격거리가 법정 보안거리의 1.1배 이내일 경우 측량기사를 통한 실측 자료가 필요(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것)

※ 흙둑 설계시 흙둑의 침하 및 유실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 보안물건 배치도(도면) 1부

- 도면은 도면상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예 : 1/1,200 축적도인 경우, 도면상에서 측량된 수치와 1,200을 곱한 값은 기재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 예정지로부터 법정 보안거리의 1.2배 이내에 존재하는 보안물건을 표시하고 실제 이격거리를 기재

○ 지적도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제조시설를 나타내는 지적도(발부일자가 신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 제조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표시할 것

○ 건물배치도 1부

- 제조시설, 경계울타리, 부속시설, 흙둑 등 포함

  ※ 흙둑 설치 계획시 설치후 침하, 유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장

- 피뢰침 설치 위치 및 높이, 흙둑 정상선 등 포함
- 각 시설의 치수 및 시설 간의 간격 또는 거리를 표시
-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흙둑을 설치하는 경우 경계울타리 바깥으로 최소 5m 이상 표시
- 지적도 상의 경계와 제조시설의 경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 건물 단면도

- 제조시설 건물(ex : 제조공실, 폭발시험장 등)의 중심을 기준으로 십자선을 긋고, 그 십자선을 따라서 단면도를 작성할 것.
- 단면도상, 경계울타리내의 시설이 모두 포함될 것.
- 도면상 피뢰침은 보호범위내에 저장소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면도를 작성할 것.
-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흙둑을 설치하는 경우 경계울타리 바깥으로 최소 5m 이상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도면상 각 시설의 높이·길이 시설간의 거리 등의 치수를 표시할 것.

○ 건물 설계도면

- 건물설계 도면은 기술검토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 신청시에 제출할여야 함.
- 각 동마다 설계명세서 포함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건물 중심을 기준으로 십자선을 긋고, 그 십자선을 따라 단면도 작성
- 피뢰침의 보호 범위내에 해당 건물이 포함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면도 작성
- 각 시설의 높이·길이, 시설간의 거리 등의 치수 표시

○ 사업계획서 1부

- 제조시설의 구조 및 위치
- 원료 화약(폭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
-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
- 자본금
- 제품설명서 : 원료, 중간재, 완제품의 물리 화학적 성질, MSDS, 제품의 용도, 특징, 성능, 사용설명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또는 저장방법등을 작성
- 제조기술 설명서 : 제조공정 설명 및 공정도, 운전 조건(온도, 압력, 습도 등), 최대 생산용량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시설규모 : 공실 동수 및 각 공실의 정체량, 제조시설 면적 등 제조시설의 규모를 가재
- 품질검사 계획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을 때 실시할 품질 검사 계획에 대한 내용(검사 항목, 방법, 횟수, 기준 등)을 기재

- 실험 장비 보유 현황 및 계획 : 품질 검사 등을 위해 회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계획인 장비에 대하여 명칭, 제조사, 년식, 용도, 수량 등을 기재

○ 위해예방계획서 1부

- 제조시설 보안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건물 및 공작물에 관한 사항
- 전기공작물 등 일반장치에 관한 사항
-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 경계요원의 수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제조방법에 대한 일반 안전에 관한 사항
- 제조방법의 위험작업 일반에 관한 사항
- 포장 및 수함에 관한 사항
- 폭발시험등의 시험 및 폐약처리에 관한 사항

○ 제품 생산 공정도 1부

- 제조제품 전반에 대한 공정도
- 제조공실별 생산 공정도
- 제조공정별 안전조치에 대한 계획 등

○ 시제품 검사(안정도시험) 계획 1부

- 제조시설 완성검사를 위해 우리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개요 작성
- 시험장소, 날짜, 항목(안전성 입증시험 및 성능시험을 포함), 방법, 합격기준, 시험 횟수 등을 기재
- 일부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에서 규정니 참조
- 시제품 검사 신청은 “화약류 안정도시험 신청서”로 신청(자세한 신청방법은 화약류 안정도 시험을 참조)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세금 계산서 발행용

○ 수수료 입금 확인증(사본) 1부

○ 기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사용설명서, MSDS 등)의 경우 번역문 제출
- 허가관청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첨부
- 이 밖에 기술검토(안전진단)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작(변환)할 것

○ 전자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작(변환)할 것

○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할 것

○ 페이지 수를 기재할 것(형식 : 현재 페이지 번호/전체 페이지 번호)

○ 전자파일은 e-mail(exp@gesta.or.kr)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관련 법령 또는 허가관청의 지시 등으로 인해, 신청에 관한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기타 검토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 접수되지 않는 경우

-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 반려/취하/철회가 되는 경우

- 2회 보완서류 요청 후에도 신청 서류(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반려, 취하 또는 철회가 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 등은 일부만 반환될 수 있음.

6 화약류 제조시설 기준 안내

□ 관련법령(시행령 제8조)

가. 제조시설의 기준

1. 제조소는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으로 구분하되, 위험구역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경계판을 설치할 것

3. 제1호의 경계울타리가 산림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경계울타리를 따라 폭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시설만을 설치할 것
5. 위험공실·화약류 일시저치장·일광건조장·폭발시험장·연소시험장·발사시험장 또는 폐약소각장(이하 "위험공실등"이라 한다)은 보안물건과의 사이에별표 4에 의한 보안거리(꽃불류·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이들의 원료용 화약이나 폭약을 취급하는 위험공실등에 있어서는 별표 5에 의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보안물건이 그 제조소의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둔다.
6. 별표 4및별표 5에 규정한 보안거리에 대응하는 정체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 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에 있어서는 정체량에 관계없이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100미터, 제3종 및 제4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50미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일시저치장은 저치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0미터의 거리를 둔다.

$$\text{보안거리} = \frac{\{\text{분모의 정체량에 대한 보안거리}\} \times \{\text{저장하고자 하는 수량의 세제곱근}\}}{\text{별표 4 또는 별표 5에 의한 정체량의 세제곱근}}$$

7. 위험공실등은 제조소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에 대하여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8. 기관실 및 연통(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기관실 및 연통을 제외한다)은 위험구역밖에 설치할 것
9.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를 할 것
10.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다만,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설치할 것. 다만,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된 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면이 아닌 방향에는 흙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화약 또는 폭약을 원료로 하여 꽃불류·신호염관 및 신호화전만을 제조하는 제조소(이하 "꽃불류등의 제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피뢰장치를 하지 아니하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으로 흙둑에 갈음할 수 있다.
12.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은 다른 공실과의 사이에 방화벽 그밖의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13.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안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식 또는 물통반전식등의 소화설비를 할 것
14. 위험공실의 부근에는 저수지·저수조·비상전등등 불을 끄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15.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이용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여는 식으로 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에는 구리 또는 놋쇠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16. 위험공실의 내부에는 흙이나 모래가 떨어지거나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7. 위험공실의 마루에는 납판·고무판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밀착시켜 화약류의 가루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와 꽃불류등의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18.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위험공실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외에는 철물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찰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 동요·탈락·부식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붙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 위험공실안의 난방장치는 증기·열기 또는 온수로 하되, 불에 타기 쉬운 물건과 사이를 띄우고 그 뜨거운 면에 화약류의 가루·먼지등이 달라 붙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
21. 위험공실안의 파라핀조·유황통등에 전열기 그밖의 높은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통밖에 섭씨 110도(유황통에 있어서는 섭씨 15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
22.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조명설비는 공실안과 완전히 떨어지게 설계된 전등으로 하고, 그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안에는 전기줄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3. 위험공실안에 설비된 기계 또는 건조장치의 금속부분은 땅바닥에 닿게 할 것
24. 위험공실등에는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현재 저치된 화약류 및 화약원료의 종류·정체량,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최대수량, 정원 및 취급상의 주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것
25. 화약류가 날리어 흩어질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안쪽벽은 간격이 없도록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26.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독기가 있는 가스가 발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에는 가스의 배기장치를 할 것
27. 화약류의 건조작업을 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건조하는 공실을 둘 것. 다만, 도화선의 제조소 또는 꽃불류등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일광건조장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8.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안의 가온장치는 건조중에 있는 화약류와 거리를 띄워서 설치할 것. 다만, 온수가온장치로서 그 온도가 건조온도와 비슷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일광건조장의 건조대는 6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30.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간의 거리가 20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을 설치하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시설간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상록활엽수를 빽빽하게 심을 것
31. 폭발시험장·연소시험장·발사시험장 및 폐약소각장은 위험구역안에 설치하고, 흙둑방폭벽 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그 주위의 수목, 잡초등을 항상 벌채할 것
32. 화약류 및 그 원료를 운반하는 용기는 그 안에 넣는 물건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3. 위험구역안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용차는 손수레·축전지차 또는 디젤차로 하되, 손수레는 운반하는 화약류에 마찰 및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축전지차 및 디젤차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할 것
34.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자동식 제조시설을 갖출 것
35.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 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를 사용장소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동혼화탱크로리차에 의하여야 하며, 제조한 후에는 그 차량을 제조소 안에 보관시킬 것

□ 관련법령(시행규칙 제8조)

가. 위험공실 연접 기준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위험공실의 좁은 면이 연접되도록 할 것
2. 연접되는 각 위험공실을 방폭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3동이상 연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접하는 모든 위험공실에서의 화약류의 제조가 전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기계의 작동중에 위험공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1.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1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연접되는 양쪽의 위험공실이 기폭약의 위험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화선의 위험공실 및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50센티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며, 양쪽의 위험공실(L자형의 준방폭식 구조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의 출입구가 격벽의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는 쪽의 격벽과 앞면의 벽이 맞닿도록 하고, 열리는 문이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9조 제2항 제3호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나. 총포·화약법 시행규칙[별표 3] 격벽의 설치기준

위험공실등의 구분			격벽의 구조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위험공실등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정체량 30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100킬로그램 초과, 3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1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정체량 2,00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600킬로그램 초과, 2,0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6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꽃불류등의 위험공실등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등	정체량 3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

1. 이 표의 기준에 있어서의 정체량의 화공품은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말한다.
2. 격벽은 위험공실 등의 구분에 알맞은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험공실 등의 구분에 있어서 다른 구분에 속하는 위험공실 등을 연접할 때에는 각각 그 위험공실의 구분에 따른 격벽구조의 양쪽을 충족시키는 구조로 할 것
3. 격벽의 기초는 폭발 또는 발화할 때 전도되지 못하도록 할 것
4. 격벽은 양쪽 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 꼭대기에는 위험공실 등의 지붕표면(지붕의 표면을 연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장한 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것

다. 총포·화약법 시행규칙[별표 4] 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

위 험 공 실 의 구 분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의 구조
화약류(꽃불류·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과 이들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30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5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100킬로그램 초과 3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4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정체량 4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60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60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3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라. 총포·화약법 시행규칙[별표 5] 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

위 험 공 실 의 구 분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의 구조기준
화약류(꽃불류등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4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정체량 4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정체량 30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그램 이하의 경우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주) 이 기준의 정체량은 화공품에 있어서는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말한다.

7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안전진단 신청서 서식

※ 자세한 관련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화약검사) 참조
https://www.gesta.or.kr/data/powder_list.php?kind=application_powder&kind_sub=list

☐ 붙임 1.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 신청서

☐ 붙임 2. 화약류 제조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붙임 1.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검토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화약류 제조시설
기술 검토 신청서</td><td rowspan="2">선결</td><td>이사장</td><td></td><td rowspan="2">지시</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rowspan="4">접수</td><td rowspan="2">일 자</td><td rowspan="2"></td></tr>
<tr><td rowspan="3">결재·공람</td><td>이사</td><td></td></tr>
<tr><td>번 호</td><td></td><td>처장</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able>

①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명칭)	전화번호: fax:
	주 소	
② 의뢰 사유		
③ 검토 대상		
④ 위 치		
⑤ 허가 사항		
⑥ 기 타		

위와 같이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1. 보안물건 배치도, 지적도, 제조시설 설계도(평면도, 배치도, 설계 명세서 포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5. 입금 확인서 1부(사본)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금 액 : 1,650,000원(1품목당, 부가세 포함)
6. 기타(기술 검토에 필요한 서류 등)

붙임 2. 화약류 제조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table>
<tr><td colspan="3" rowspan="4">화약류 제조시설
안전진단 신청서</td><td>선결</td><td>이사장</td><td></td><td>지시</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 자</td><td></td><td rowspan="4">결재·공람</td><td>이사</td><td></td></tr>
<tr><td>번 호</td><td></td><td>처장</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① 신 청 인/
회 사 명</td><td>성 명/
(명칭)</td><td colspan="7">전화번호: fax:</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② 의뢰 사유</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③ 검토 대상</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④ 위 치</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⑤ 허가 사항</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⑥ 기 타</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9">위와 같이 화약류 제조시설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td></tr>
<tr><td colspan="9">※ 구비 서류
1. 보안물건 배치도, 지적도, 제조시설 설계도(평면도, 배치도, 설계 명세서 포함)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5. 입금 확인서 1부(사본)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금 액 : 1,650,000원(1품목당, 부가세 포함)
6. 기타(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 등)</td></tr>
</table>